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2. 3. 22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567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4. 강남구청장(주민자치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3. 22.)
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양미영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2021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」 지표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,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통장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함

나. 주요내용

-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신설(안 제7조제5호 및 제6호)
 - ‘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때’ (안 제7조제5호)
 - ‘학교장,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’ (안 제7조제6호)

-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명확화(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)

-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준수한 용어 및 문장 정비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입법예고(2022. 1. 28. ~ 2022. 2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-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, 통장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, 선발 기준·과정 등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상의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.
 - 2020. 6. 국민권익위원회는 1. 장학금 지급 대상의 지역간 차별 2. 장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·공정성 미흡 3. 장학생 선발과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서류 제출 요구 4. 장학금 중복 지급 시 조치에 대한 규정 불명확 5.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불분명한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음.
 - 특히, 통장 경력이나 자녀의 학업 성적 등 세부적인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이 상존하여 장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·공정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.
 -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,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여짐.
-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
 - 안 제7조(장학금의 지급정지)제1호의 규정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정지 사유로 보기에에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조례의 <사례>1)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 바

삭제하기 보다는 <예시>²⁾와 같이 조문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. 제2호에서는 제2조제1항³⁾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할 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제2조제1항의 규정내용은 자격과는 무관해 보이고 장학금의 신청자격도 통장신분이어야 함에도 현행 조문구성은 통장과 통장자녀가 혼용되어 문제가 있는 바 제2조는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. 제3호 중 장학생이 자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바 <예시>⁴⁾와 같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. 제5호의 규정은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을 때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려고 하나 제2조제4항⁵⁾에서는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

1) <사례>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·반 설치 조례

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⑤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.

1.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였을 때
2.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
3.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- 4.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**
- 4의2. 제9조에 따른 통·반장회의에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5회 이상 지참하였을 때
5.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
2) <예시>

1.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을 야기할 때

3) <현행 조례>

제2조(장학생의 신청대상 등) ① 통장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**신청대상**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지역발전·반사회 운영·질서·환경개선·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
2. <삭제 2002.10.4>
3.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·체육·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

<예시>

제2조(장학생의 신청대상 등) ① 통장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신청대상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녀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으로 한다.

4) <예시>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
제7조(장학생의 지급정지) 3.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
5)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
제2조(장학생의 신청대상 등)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기업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는 통장의 자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장학금) ②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의 경우,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.

수 있으며 제5조제2항에서는 타 장학금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. 제6호의 신설규정은 학교장,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만 있으면 그 사유를 묻지도 아니하고 바로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하기 보다는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지급정지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
제567호

제안일자 : 2022.3.22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통장 자녀의 장학금 신청 및 지급정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수정주요내용

- 장학생 신청대상 관련 조의 제목 정비 및 조문의 용어를 보다 구체화(안 제2조)
-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 및 구체화(안 제7조제1호, 제3호, 제5호)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 제목 “(장학생의 신청대상 등)” 을 “(장학금의 신청대상 등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통장의 자녀로서” 를 “통장으로, 그 자녀가” 하며, 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” 를 “경우 신청할 수 있다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통장의 자녀” 를 “학생” 으로 한다.

안 제7조제1호 중 “사직하거나 해촉되었을 때” 를 “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을 야기할 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장학생의” 를 “장학생이 자퇴하거나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.

5. 학교장,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

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

2. 장학생의 품행 및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

3. 장학생의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
4. (생략)

5.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되었을 때

<신설>

-----.

1. ----- 사직하거나 해촉되었을 때

2. 장학생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-----

3. 장학생의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
4. (생략)

5.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을 때

6. 학교장,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

-----.

1. -----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을 야기할 때

2. (개정안과 같음)

3.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학교장,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

<삭제>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장학생의 지급대상 등)”을“(장학금의 신청대상 등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통장의 자녀로서”를 “통장으로, 그 자녀가”로, 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”를 “경우 신청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통장의 자녀”를 “학생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”를 “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을 야기할 때”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장학생의 품행 및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”를 “장학생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장학생의”를 “장학생이 자퇴하거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학교장,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장학생의 신청대상 등) ① <u>통장자녀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신청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 3. <u>품행이 단정하고 기능·체육·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</u></p> <p>제7조(장학금의 지급정지) 동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<u>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</u></p>	<p>제2조(장학금의 신청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통장으로,</u> <u>그 자녀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 신청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학생</u></p> <p>제7조(장학금의 지급정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을 야기할 때</u></p>

<p>2. <u>장학생의 품행 및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</u></p> <p>3. <u>장학생의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되었을 때</u></p>	<p>2. <u>장학생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-----</u> -----</p> <p>3. <u>장학생이 자퇴하거나 -----</u>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학교장,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</u></p>
--	--